



2019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13:30 ~ 18: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9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제30차) 추계학술대회〉

1.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13:3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주제 : “군인권의 현황과 과제”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 세부내용

시간	세 부 내 용
13:30-14:00	○식전 등록 및 입장
14:00-14:30	제1부: 개회식 및 기조 발제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사회: 손진희(송실사이버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선언 ----- 나달숙(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개회사 ----- 나달숙(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축사 -----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14:30~15:30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군 인권 실태의 변화추이와 주요 현안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좌장: 이지혜(서울교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김광식(국방연구원) ▪ 토론: 김갑석(중부대), 김태동(김포대)
15:30~16:30	[제2주제] 군 인권의 사각지대,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좌장: 이지혜(서울교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이경미(대전해바라기센터) ▪ 토론: 김광병(청운대), 노자은(중앙대)
17: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좌장: 박인현(대구교대)
17:30~17:50	제3부: 폐회식 및 만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 ----- 손진희(총무이사) ○폐회사 ----- 나달숙(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백석대 교수) ○폐회 선언 ----- 나달숙(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백석대 교수) * 만찬의 시간 ----- 다같이

〈2019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제30차) 추계학술대회〉



인사말

결실의 계절 10월에 군대인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회원님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법과 인권의 보호가 교육을 통해 실질화되고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학회가 연구해오고 추구해온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흔쾌히 축사를 해주시는 김향규 군인권조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우리 학회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학술 발표는 “군대인권의 현황과 과제” 이라는 대주제하에 “군 인권 실태의 변화추이와 주요 현안”, “군 인권의 사각지대,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 의 발제로 진행됩니다. 학술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사회를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대인권의 현황을 검토하고 군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향 과제를 제시하는 뜻 깊은 학술발표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사다망한 중에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명실상부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회가 법과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저감지역에 인권고양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나달숙 올림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김향규입니다.



먼저 2019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의 제3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해 나달숙 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군대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해 발표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사법제도 개혁, 장병의 복지향상, 복무여건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큰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사건 등을 통해 살펴보면 아직은 군대 내 요소요소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인권인식 또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여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등에 권고하거나 군 인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연구진과의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하여 부사관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였고, 곧이어 이를 군 인권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을 살펴보면 지난 5월 탄약창 부사관의 총기사망, 9월말에는 소초장인 소위의 총기사망 사건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사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갈 초급 간부가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2018. 6. 29.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군 인권에 관해 군대 내에서 자발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거나, 군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다양한 이슈가 분출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군 인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학술대회 주제를 선택하여 군인권 관련 주요현안, 군인권 사각지대 특히 초급간부의 인권감수성에 대하여 토론하게 됨으로써 이 자리의 발표내용과 토론자료가 우리나라의 군인권 관련 방향설정과 울림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	1
- 김광식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17
- 김갑석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 토론문	21
- 김태동	
군 인권의 사각지대	25
- 이경미	
“군 인권의 사각 지대: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 토론문	47
- 김광병	
“군인권의 사각 지대 :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 토론문	49
- 노자은	
[부록] 표절과 연구윤리	51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

2019. 10



책임연구위원 김광식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군 인권정책의 전개 과정
3. 군 인권 실태 변화 추이
4. 최근 주요 인권 현안과 과제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 최근 군 인권 상황은 15년 여에 걸친 병영문화 개선 노력과 더불어 각종 인권정책의 시행으로 제도적·환경적 진전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병영의 보편적 인권 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침해적 상황이 거듭 발생하여 군 내 인권 취약계층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군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진전을 위해 '인권'에 대한 군의 인식과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
- 여기서는 정책과 실행의 관점에서 군 인권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을 살피고, 병영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면서 군 인권 관련 현안과 과제를 식별해 보고자 함

2. 군 인권정책의 전개 과정

2-1. 군 인권 문제의 제기 배경

- 군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점증
 - 2000년 대 들어 국민 인권의식 향상, 인권의 국가의제화, NGO 활성화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 국가인권위원회(2001) 활동이 군 인권 관심 촉발
 - 교도소, 학교에 이어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주목
 - 군의 권위적 지휘통솔 방식, 서열/신분의식, 낙후된 병영환경 개선 요구 점증
- 병영 사건·사고 발생 → 사회적 이슈화 → 정책적 접근 추동
 - '05년 육군훈련소 사건, GP 총기사건, 의료사고 등 병영 사건·사고 발생
 - 병영악습, 열악한 복무여건 등 병사를 둘러싼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
 - 민관군 합동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군 차원의 개선 정책 촉발

2-2. 군 인권정책 추진 경과 (1/2)

□ 정책 추진 주체의 설정

- '06. 1.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팀 신설, '07. 4~12. 육·해·공군 인권과 신설

□ ('06~'07) 인권정책 추진 방향 모색

- 국가인권위 공동 인권교육 실시, 각종 실태조사, 인권세미나 개최 등
-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도입(영창처분의 위헌성 지적에 따른 영창적법성 심사 강화), 기본권전문상담관 제도 시행

□ ('08~'10) 세부적 실행을 위한 정책지침 마련, 인권교육 기반 구축

- 군인권교육 훈령,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제정, 군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 인권업무종사자 교육과정 개설, 인권교육 교재 발간, 지휘관 인권 가이드라인 설정
- 국방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장병 인권실태 조사 정례화

2-2. 군 인권정책 추진 경과 (2/2)

□ ('11~13) 인권정책 추진체계 확립, 침해구제 활동 본격화, 인권교육 심화

- 군 인권업무 훈령 제정,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강화
-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개선, 전국 순회 인권교육 시행, 장병 인권교육 핸드북·영상 자료 제작
-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 ('14~현재) 인권인프라 구축,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발전

- 통합 '군 인권업무 훈령' 제정, 국방인권모니터단 및 시민 국방인권모니터단 발족
- 국방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인권상담관(법무관) 제도 도입, 부대 인권교관 양성,
- 국방통합인권시스템('군인권지킴이') 구축, 인권교관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6)

2-3. 정책의 성과와 내재적 한계 (1/4)

□ 2005년 이래 주요 제도 개선 조치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운영('05~현재, 약 520여 명)
-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위수지역 폐지) ('19년 4월~)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예정)
- 영창 폐지(2020년 예정)
- 여군 인권상황 개선(진행중)
- 군사법제도 개혁 및 군사법원 폐지(진행중)

2-3. 정책의 성과와 내재적 한계 (2/4)

□ 성과

- 정책 형성·집행 과정의 체계화,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마련, 인권인프라 구축으로 군 인권 보장·증진 활동이 군에 '제도화'된 형태로 정착
- 특히, 인권교육의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군의 인권가치 수용이 불가역적이라는 인식이 확산

※ 국가인권위원회 '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 '기관별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 평가'에서 국방부·군대가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인명·자살사고, 병영폭력의 현저한 감소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복무' 여건 증진
- 병영시설 개선 등으로 복무여건, 복지 측면 개선
- 물리적 생명보존 욕구(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충족과 보편적 침해 양상 완화에 기여, 그러나 확장·다변화되는 권리 요구에 대한 대응은 미흡

2-3. 정책의 성과와 내재적 한계 (3/4)

□ 한계 : schema & paradigm

병영 사건·사고 발생	[사회] 사건·사고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집단괴롭힘 등 인권침해적 상황과 비민주적 군 운영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
↓	
다양한 진단 /대책 논의	[민·관·군 합동 논의] 인권 보장 제도 개선, 생활환경 등 복무 여건 개선, 의료, 상담 등 다양한 개선·혁신 요구 표출
↓	
군의 고려	[군] 인권 개선 요구 일부 수용, 동시에 전투력 유지 및 병력 관리 를 위한 조치(기강, 리더십, 교육훈련 등)가 필요하다고 인식
↓	
모호한 정책 패러다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 범위의 확대 → 개선·혁신 본령 혼란, 설득력·추동력 제한 • 병 중심의 시혜적 조치 (편향성)

☞ **병영 문제에 대한 군의 schema가 임무수행 여건 조성을 위한 ‘사고 예방’, ‘병력관리’에 고착됨으로써 인권 가치가 복무·복지, 지휘통솔, 병영관리 등 국방 운영 전반에 투영되고 구현해 나가는 데 한계를 노정**

2-3. 정책의 성과와 내재적 한계 (4/4)

□ **인권 가치의 군 수용과 실천은 민주국가의 군대에 대한 당위적 요청이며, 민군관계 측면에서 군에 도움되는 행보임을 명징하게 인식하지 못함**

- 군 인권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군은 지속적으로 ‘국가안보’ 임무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 이를 전제로 군의 특수성(군 고유가치) 유지가 중요함을 강변
 - 병영문화 혁신, 인권 보장 → 편한 군대, 나약한 군대? 기강 해이? 전투력 약화?
 - 인권과 지휘권은 길항관계? 서로 충돌?

□ **인권가치의 군 수용이 갖는 당위성, 실효성 인식 내재화 및 우려 불식 필요**

- (당위성) 헌법가치의 기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 합헌적 군사제도로써 군은 국가의 물리적 수호 뿐만 아니라 근본 가치(헌법가치)도 수호해야 함
- (실효성) 인권 보장 → 군인을 권리주체로 인정 → 국가·국민·군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생각하는 병사’ 양성 → 강한 군대, 군율이 엄정한 군대
- (현실성) 지휘권의 행사 요건(적법성·정당성·직무한정성)을 갖춘 합리적 지휘통솔 → 인권 보장과 양립 가능

3. 군 인권 실태 변화 추이

□ 변화 추이 검토를 위한 주요 참고 자료

- 「'17~'18년 군 인권실태 조사」 결과(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공동 주관)
- 군 사건·사고 통계('19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검토

□ 「'18년 군 인권실태 조사」 개요

구분	병사	간부(장교, 부사관)
조사 기간	2018. 9. 10 ~10. 4	2018. 9. 11 ~10. 10
조사 방법	집단조사 (면접원 부대방문, 설문 시행/회수)	웹서베이시스템 조사
유효 표본	4,018명	1,468명
표본 추출	층화다단계집락표본추출	
표본 오차	±1.48%	±2.04%

3-1. 신체의 자유, 인격권, 생명권 관련 침해 발생 추이 (1/2)

□ 주요 특징

- 구타·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점감 추세
-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간부·병사 공히 인격권 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증가
- 성관련 문제는 군의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 특단의 노력 필요
- 사망사고, 특히 병사의 자살사고가 대폭 감소

□ (병사) 군 생활 중 침해행위별 직접경험 빈도

구분	'18년	'17년	'16년
구타	2.4%	1.0%	구타/가혹행위 10.8%
가혹행위	3.8%	1.6%	
성추행/성폭력	1.2%	0.5%	성추행/성희롱 4.5%
성희롱	2.6%	0.7%	
사적지시	12.8%	4.3%	
언어폭력	13.6%	5.8%	

3-1. 신체의 자유, 인격권, 생명권 관련 침해 발생 추이 (2/2)

□ 최근 5년 간 성관련/폭행 등 징계 현황(전군 장교/준·부사관/병/군무원 합산)

- 성관련 규정위반 징계 건수는 '15년 이후 지속 증가
-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15년 이후 점감 추세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 6월
성관련 규정 위반	864	1,081	1,068	1,366	1,336	1,414	469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17,533	20,539	16,758	15,501	13,338	12,207	3,715

□ 최근 5년간 사망 및 자살사고 현황

- 병 자살사고는 '15년부터 대폭 감소, 준·부사관 자살사고 지속 발생에 관심 필요

구분	사망사고 합계	자살사고 소계	신분별 자살사고 현황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13년	117	79	7	24	45	3
'14년	101	67	5	16	40	6
'15년	93	57	5	26	22	4
'16년	81	54	7	22	21	4
'17년	75	51	9	22	17	3
'18년	86	56	11	21	21	3
'19년 6월	37	26	2	7	15	2

3-2. 청원권 관련 : 침해 경험후 구제 요청 등 (1/2)

□ 주요 특징

- 문제 미해결, 신원노출에 따른 사후피해 우려로 신고·구제 요청 기피(병·간부 공통)
- 병사들은 부대 지휘계선 및 군 침해구제 제도에 대한 도움 기대가 낮은 상황임
- 병·간부 인식 격차가 크나, 간부도 지휘계선 외 문제제기가 억제되는 분위기가 강함

□ (병사) 침해 행위 경험자 중 12.9%가 '보고·신고'

- 보고·신고하지 않은 이유 : 군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 28.4%,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28.0%), 보고·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13.5%)

□ '인권침해 행위 관련 부대 사후조치 적절성'에 대해 장병 신뢰가 높지 않음

- 병사 : (매우+대체로)그렇다 36.5%, 보통이다 21.2%, (별로+전혀)그렇지 않다 40.4%
- 간부 : (매우+대체로)그렇다 18.2%, 보통이다 2.3%, (별로+전혀)그렇지 않다 20.5%

3-2. 청원권 관련 : 침해 경험후 구제 요청 등 (1/2)

- 인권침해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 보호에 대해 병사 불신, 간부와 대비
 - 병사 : (매우+대체로) 그렇다 23.4%,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52.3%
 - 간부 : (매우+대체로) 그렇다 48.6%,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29.5%
- (병사) 군 복무 중 고충 시 대화 상대는 군 동료, 가족·친지 우선
 - 군 동기/동료 35.2%, 가족/친지 32.2%, 사회의 친구/애인 21.5%, 선임병 5.1%, 부대 지휘관·간부에 대한 고충 호소 미미
- 군내 인권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점진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
 - 병사 : (매우+대체로)그렇다 52.2%, 보통이다 27.3%, (별로+전혀)그렇지 않다 20.5%
 - 간부 : (매우+대체로)그렇다 68.7%, 보통이다 23.6%, (별로+전혀)그렇지 않다 7.6%

3-3. 자유권 관련

□ 주요 특징

- (병사) 부대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휴식권 등 요구 증가
- (간부) 신상관리·생활통제 관련, 침해 경험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잔존

□ (병사) 부대 내 사생활 침해 관련 경험 빈도 [단위 : 있다(자주+가끔) %]

항목	'18년	'17
일과 후 생활관 휴식 및 활동 제한	17.4%	21.8%
관물대/소지품 등 부당한 검사	12.6%	11.0%
개인 서적 반입의 부당한 제한	2.3%	2.2%
수양록/이메일/블로그 등 무단 열람	1.5%	1.9%

□ (간부) 자유권 침해의 유형별 경험 빈도

항목	'18년	'17
양심의 자유 침해(금연·금주 서약서, 21시 귀가 서약서, 차량이용 관련 서약서 작성 강요)	6.9%	9.8%
사생활 침해(독신자 숙소 귀가시간 통제, 입의 출입 등)	6.7%	7.9%
개인 재산권 행사 침해(차량/이륜차 소유·운행 제한 등)	4.6%	5.3%
개인정보 침해(계좌 공개 요구, 이메일이나 휴대폰 열람, 휴대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 설치 등)	2.6%	3.5%

3-4. 평등권 관련

□ 군 복무 중 요소별 차별 경험

- (병사) 용모/신체조건 9.4%, 출신지역 6.5%, 학력 5.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3.4%, 종교 1.9%의 순
- (간부) 신분 13.5%, 임관출신별 보직·진급 12.7%, 성별 6.8%, 용모/신체조건 5.0%, 학력 5.0%, 결혼 여부 5.0%, 출신지역 4.1%의 순

3-5. 생활/건강/복지권

□ 병사 생활 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만족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

- 부대시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급식·보급품에 대한 만족 정도가 아직 낮은 수준

□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군 의료서비스 만족 응답 : 병사 28.4%, 간부 45.9%('17년 대비 소폭 감소)

* 주요 불만 요인 : 불친절, 진료 불성실, 의료시설 낙후, 오진율,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

3-6. 인권 관련 의식과 평가 인식 (1/2)

□ 주요 특징

- (병사) 군 인권 상황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군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간부) 군 인권 보장이 지휘권, 군 기강, 전투임무 수행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편화, 그러나 정책·제도·운영과는 괴리

□ 병사

- 군 내 병사들의 인권상황 변화 : (매우+대체로) 개선 86.1% ('17년 대비 5.8% ↑)
- 현재 군내 인권 보장 정도 : (매우+대체로) 보장되고 있다 63.5% (9.2% ↑)
- 군 인권보장의 전투력 및 전투임무 수행에 대한 영향 : 긍정적 86.1%
- 군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만족도 : (매우+대체로) 만족 53.1% (4.8% ↑)
- 군 내 인권침해 상황이 주로 발생하는 관계 : 병 상호 간 58.4%, 병-부사관 간 26.8%, 병-장교 간 8.9%

3-6. 인권 관련 의식과 평가 인식 (2/2)

□ 간부

- 장병 인권 강조가 지휘권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을 미친다 74.9% → (매우+대체로) 긍정적 영향 83.4%
- 장병 인권 강조가 군 기강 확립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을 미친다 75.5% → (매우+대체로) 긍정적 영향 74.6%
- 군 인권보장과 전투력 및 전투임무 수행 관계 : 긍정적 72.9%
- 지휘관/상급자의 부당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보장 : (적극+어느정도) 보장 93.8%

3-7. 변화 추이의 특징과 함의 (1/2)

-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때,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물리적-생명보존 욕구, 자율 욕구, 사회적 욕구로 분류할 수 있음
- 그간 군 당국의 인권 보장 활동은 '물리적-생명보존 욕구(안전과 최소한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충족에 매진해 왔고, 보편적 침해 양상은 완화되었으나 인권 취약 계층은 잔존
- 국가인권위원회 및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진정·신고 내용을 참조하면,
 - 구타·가혹행위 등 신체적 자유 침해 양상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사각지대 잔존
 - 병영부조리(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비리/갑질), 언어폭력을 통한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통제, 성희롱·성폭력(여군, 간부-병사, 병사 간), 의료사고, 성소수자 문제 등이 지속 제기

3-7. 변화 추이의 특징과 함의 (2/2)

- 동시에 병영에서는 '자율 욕구',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어, 군 인권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함
 - 즉,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 요구, 군 구성원 간 인격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식 증가 (공관병 사건, 군 간부집단 내에서의 평정권자-피평정자 간 관계 등),
 - 군인의 정치·사회적 권리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이러한 욕구의 표출과 정책적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군의 '조직침묵' 상황의 극복이 긴급
 - 공익신고는 물론 고충 제기 시에도 인사상 불이익(간부)과 부정적 낙인효과(병사)를 우려해 조직상황의 문제점이나 침해상황에 대해 의견 제시, 구제 요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매우 심각함
 - 군내 인권증진을 위해 '조직침묵' 상황의 해소가 매우 시급함

4. 최근 주요 인권 현안과 과제

4-1. 군 인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기본 원칙과 과정

- **군 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사회와 군이 공유해야 할 원칙 혹은 기준**
 - 군의 고유(혹은 기본) 가치와 질서는 민간(사회 혹은 정치)의 영역이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형성해 나가야 함(민주주의 국가의 민군관계 원칙에 유념)
 - 군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군인을 시민과 같이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되, 군인의 권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필요성의 범위내에서 법에 근거해 제한
- **'쟁의'적 과정과 '합의'를 거쳐 군인 인권의 범주와 내용을 확정**
 - 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쟁의적'인 것으로서, 특정 시점에서 완결적일 수 없음
 - 사회와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실천할 지에 대한 합의 필요
 - 따라서 실태 조사와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들을 토대로 지켜져야 할 권리를 식별하고, 이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함

4-2.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군인 인권 목록과 주요 이슈

범 주	이슈 혹은 현안
인간의 존엄/행복 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폭력 • 식사, 보급품, 주거환경 등 삶의 질 개선 • 의료 접근권, 휴식권
평등권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성별·종교·신분·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여군 차별 문제 (진출 제한 등)
자유권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자유) 영창제도 • (사생활의 자유) 초급간부 영내 생활 강제, 간부독신숙소 불법 점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초급간부 승용차 소유 제한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병영내 금서 지정, 불법 부당 명령 거부권, 양심적 병역거부 • (통신의 자유) 병사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경제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및 연금 청구권(병사 봉급)
청구권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군 사법제도 개선) • 침해 구제 및 고충 처리의 실효적 이행, 신고자 보호, 사후 피해 방지 • 의견건의권 보장, 집단 청원의 허용 (중개위원, 대표병사)
정치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의사결정 및 참정권 (정치적 토론과 의사 표현의 허용)
사회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

4-3. 국방분야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요구 (1/2)

□ UN 등 국제기구 권고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진행 중)
-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폐지 요구(동성애 차별 관련 군형법 제92조의6 개정 문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17~2021) 중 군 관련 추진과제 권고

- 「군인복무기본법」에 부합되는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신고·구제 체계 강화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및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군 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 후송 전용헬기 확보 등 군 장병에 대한 의료 접근권 향상
- 군 장병 대상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인권교육
- 군사법제도 지속 개선 및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4-3. 국방분야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요구 (2/2)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 ※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여군 야외 훈련 시 숙영시설 개선 등)
-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

□ 시민단체 등

- 군내 성범죄 예방
- 동성애 차별 철폐
- 영창 폐지
- 병사 봉급 인상 등 군인의 전반적 복지 향상

4-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1/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보완

- 협소한 권리 규정 보완, 군인 권리장전으로서의 실질을 확보

□ 인권침해 예방·신고·구제 체계 강화 및 실효적 운영 추구

- 현재 운영중인 군내 각종 신고·구제 체계의 점검 및 통폐합 추진
 - * 인권침해진정조사, 소원수리, 고충심사, 인사소청,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국방헬프콜, 양성평등담당관, 인권상담관 제도 등

□ 군 인권정책의 지평 확대

- 병영관리, 병사보호의 틀을 탈피, 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정책 추진
- 국방운영 차원의 상시적 과업으로서, 인권과 병영문화, 복지 등의 통섭, 통합적 접근
- 군 인권정책 기획·계획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중기적으로 인권친화적 군문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규범 체계의 재정립 노력 전개

4-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2/4)

□ 군 인권정책 기획·계획 체계의 정비

- '군인복무기본정책'과 '군 인권정책'의 포섭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군 인권업무 훈령」상의 종합계획 체계를 정비
 -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는 5년 주기 군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규정
 - 그러나 「군인복무기본법」에서도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문서가 법률적 효과를 갖는 군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이라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시 제반 군 인권정책의 주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군 인권업무 훈령 상의 '종합계획' 간 관계를 정비해야 함
-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후 국회 보고 등을 규정화하여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군 인권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여야 함
 - 군 인권정책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정책'이 국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해 공개적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4-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3/4)

□ 조직문화 개선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군 내외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과 장병 고충처리 여건의 개선, 합리적인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조직침묵'을 완화할 수 있는 관련 인사제도의 개선을 추진
- 신고·상담 관련 익명성 보장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 조항의 적극 시행
 - 신분 공개 시 처벌규정 및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항의 시행을 강화하여 실효적 보호 보장
- 다면 평가제도 재도입
 - 군 내 고충 및 진정 제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검토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기풍과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상향 평가, 동료 평가 등을 시행
- 진급심사·장기선발·보직심의 절차 등 개선
 - 고충·진정의 제기, 내부 고발로 인한 불이익 제거를 위해 진급 선발 및 심사, 장기 선발, 보직심의 시 해당 심사자료에 관련 내용을 제외토록 하고, 관련 논의를 배제하도록 규정화
- 지휘책임 범위의 합리적 설정과 부과
 - 지휘관 책임 범위와 양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휘관의 책임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장병의 고충·진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 및 규정을 정비

4-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4/4)

□ 군 내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시행

- 여성 군인, 성 소수자, 다문화 장병 등에 대한 차별 철폐 방안의 강구와 실천

□ 군내 대의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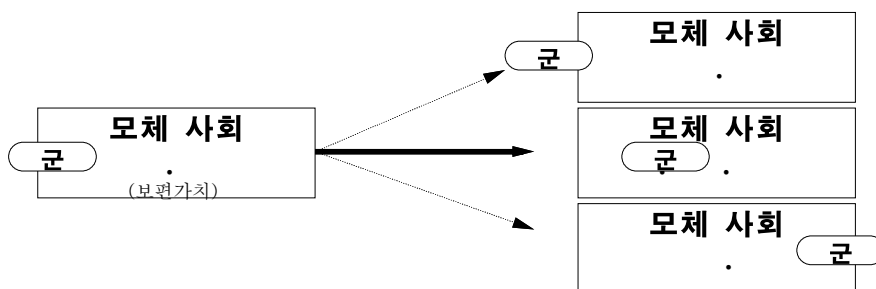
-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 군내 각 계층의 의사가 군 운영과 부대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 대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독일연방군의 대표위원 제도 등 참조

□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조속 설치·시행

- 2005년부터 거론되었으나 2019년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한 제도로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 제1항)에 그 설치가 명시되어 있음
- 위의 모든 사안들을 통합적·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제도적 방편이므로, 그 조속한 설치 및 시행이 시급함

5. 맺는 말

- 인권 가치의 군 안착을 위해서는 군대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군대는 사회의 거울, 그러나 생래적으로 변화 지체(lag)



- 군대도, 우리 사회도 비인권적 문화 특성을 여전히 보유, 표출
 - 군에서 남성성, 남성다움은 계급질서 유지의 중요 기제, 차이에 대한 혐오 합리화, 여성성 혐오,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성문화, 건강하지 못한 남성성 형성
 - 강압적·서열적 인간관계를 생산하는 군대문화에 대한 선호 (극기 훈련, 대학문화)
- 시민사회의 자기비판과 성찰을 통해 군대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해야 함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김 갑 석(중부대학교)

1. 들어가며

먼저, 좋은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나달숙 회장님 이하 임원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 인권 전문가이신 김광식 박사님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해 15년에 걸친 군 인권정책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병영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군 인권 관련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군 인권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제자의 군 인권 관련 현안과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과제

정부에서는 군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발제자가 발제문에서 언급을 하였다시피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¹⁾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2019~2023 국방인권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²⁾

발제자는 군인권 보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조속한 설치·시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³⁾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⁴⁾ 저도 군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그 시행의 시급함에 발제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을 보면 업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명칭과 소속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국

1) 「100대 국정과제」 “89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국방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2) 국방부 2019년 2월 25일자 보도자료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 참조.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8월 25일자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 인권위 내 군인권 보호 업무의 종합적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참조.

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하자는 법안⁵⁾과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법안⁶⁾과 ‘군인권특별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자는 법안⁷⁾이 있습니다.

이에 발제자께 질문 드립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그 설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해결을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군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발제자께서는 발표문에서 군인권교육의 정책추진과정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06-'07)에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08-'10)에 군인권교육 훈령을 제정하고, 인권업무종사자 교육과정 개설, 인권교육 교재 발간, 지휘관 인권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인권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1-'13)에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개설, 전국 순회 인권교육 시행, 장병 인권교육 핸드북·영상 자료 제작을 하였으며, ('14-현재)는 부대 인권교관 양성 및 인권교관 교육과정 개설 등 군인권교육의 정책의 발전과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그 형식적인 과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 8. 22, 19진정0278000 결정]

지난 4월 육군사관학교의 일부 생도들이 음주규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들이 의견을 모아 자성의 의미로 2, 3, 4학년 생도 전체 900여명이 단체뒀걸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일부생도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2, 3, 4학년 전체생도들을 대상으로 단체뒀걸음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단체뒀걸음이 지휘근무생도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아 진행된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토론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아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차려의 성격으로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군대 내에서 집단 책임주의는 구성원간 연대가 요구되는 전시나 교육훈련 등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에 까지 집단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8인).

6)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의원 등 27인).

7)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생도들이 임관 후 일선에 배치되면 연대책임의 문제는 비단 위 진정사건의 생도들만이 아니라 해당 교육과정을 거친 생도들이 임관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일선부대 장병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해 온 바와 같이, 징병제 하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경험하는 군대문화가 결코 군대라는 특수공간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일반 시민사회 곳곳의 집단문화로 자리 잡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장에 대하여 생도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근무 생도들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교육은 구성원의 실질적인 교육효과의 발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효과는 교육방법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저는 반복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내용에 있어 방법적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발제자께서는 군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나가며

끝으로 발표자께서는 인권 가치의 군 정착을 위해서는 군대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견해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군인권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을 통해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께 감사드리고, 오늘 학술대회에서 토론한 내용이 군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 2019. 8. 22, 19진정0278000 결정, p.7-8.

“군 인권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요 현안” 토론편

김 태 동(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군사조직이 결성되는 제1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군대는 국가를 침략하는 타국의 군사력을 제거하고, 그들의 병기를 무력화하는 전술과 전략을 학습하는 곳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인권을 논하는 것은 모순적 측면이 많다. 하지만 국가안보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할지라도 군대는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군 인권실태의 변화 추이와 현안과 관련한 연구는 최근의 군 인권정책 전개과정을 재고하고, 앞으로 군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사뭇 중요할 것이다. 다만, 군 인권과 관련한 몇가지 제안을 통하여 좀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군 인권정책과 관련 현안을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군 인권”의 개념적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최현(2011)과 배화옥(2015) 등에 의하면 인권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인권의 구성요소에는 인권에 대한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권리의 내용, 권리의 근거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권리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인권	권리적 성격
권리주체	권리를 보유한 주체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	보편적 권리
의무주체	권리 주체에 의무를 가지는 상대방	모든 인간	일반적 권리
권리내용	무엇에 대한 권리	인간으로서 삶에 매우 중요한 근본 가치	근본적 권리
권리근거	권리 인정 근거	법체계 승인과 무관히 오로지 인간이기에 가짐	도덕적 권리

* 배화옥 외, 인권과 사회복지, 나남, 2015, p. 24. 정리.

표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인권의 구성요소처럼, 군 인권의 권리주체와 인권실행의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군 인권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군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일관적인 군 인권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배화옥 등(2015)의 인권 구성요소를 군 인권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권리주체·의무주체

군인권의 권리주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소개한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과, 군인권교육훈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검색되지 않았고, 다만, 군인권교육, 군 인권실태, 군 인권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군 인권업무 훈령」(이하 훈령)을 찾아볼 수 있었다.

훈령은 2011년에 시행되었고, 수차례 개정을 하였는데, 이 훈령을 토대로 기존의 기본적인 군 인권정책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의 발제내용에서도 구체적인 군 인권 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다만, 훈령에서 권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서 훈령 제4조에서는 군 인권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와 의견 표명의 주체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으로 규율되어 있다.

제4조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장병 및 군무원(이하 "장병등"이라 한다)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리주체는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권리주체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용이하게 (이미)누리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상”보다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권리를 향유하기 어려운 대상”이 권리를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나 규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훈령 제4조에서 국방부장관 과 참모총장의 군 인권업무의 개선이나 시정요구는 당연한 의무의 주체이며, 이를 향유하는 권리주체는 병(兵)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내용을 보면 명쾌한 군 인권의 개념, 권리주체, 의무주체 등이 충분하지 않다. 군 인권정책의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2. 권리내용·권리근거

발제문 “군 인권정책 추진 경과 2/2”에서 연구자는 군 인권정책추진법의 예시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군 인권관련 권리주체와 방법, 권리 내용 등이 발제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어 독자로서 아쉬움을 주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제시를 제안한다. 예컨대, 기본법 제10조에서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군인에게도 동일하게 향유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기본법에서 제시된 군 인권의 사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3조), 종교생활의 보장(제15조), 의료권(제17조), 인권의 권리구제 수단(제6장)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기술한 발제문 “군 인권 실태 변화 추이”에서는 군 인권의 예시로 청원권, 자유권, 평등권, 생활건강 복지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법과 발제문의 군 인권을 비교하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되리라 본다.

이외에도 발제문에서 제시한 “군 인권정책 추진 경과(4쪽)”에서 참고한 문헌 중 군의문사진 상규명위원회(2000), 국가인권위원회(2001), “정책의 성과와 내재적 한계 2/4(5쪽)”에서 참고한 국민인권의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6), “군 인권 실태변화 추이(8쪽)”에서 참고한 “17-18년 군 인권 실태조사”의 참고문헌 서술이 문미에 제시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배화옥·심창학·김미옥·양영자, 인권과 사회복지, 나남, 2015.
최현, 인권, 책세상, 2011.

군인권의 사각 지대

-초급간부 대한 인권감수성

前)육군 성고충상담관 이경미

국방목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 방 부

소속기관(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한시기구(2)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합동참모본부

육군

병무청

국직부대·기관(26)

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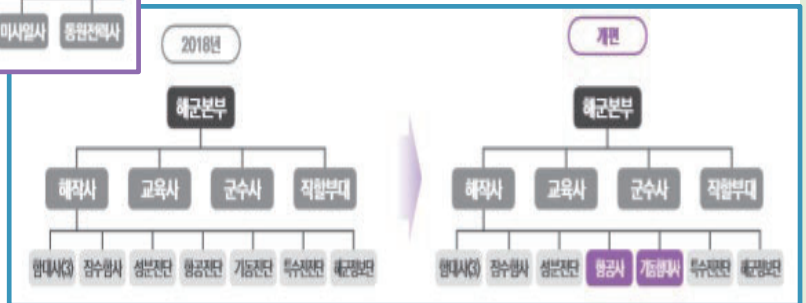
방위사업청

공군

(*가나다순)

- 계룡대군무지원단
- 고등군사법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기무사령부
- 국군복지단
- 국군사이버사령부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심리전단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인쇄창
-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체육부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방대학교
- 국방부검찰단
-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군무지원단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국방부조사본부
- 국방시설본부
- 국방전비태세검열단
- 국방정보본부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합동군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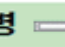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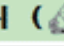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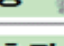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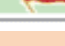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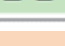
<출처: 지식블로그 포마블2015년 기준>



<출처: 2018국방백서>

군 계급 구성

병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장교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
	장관급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병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분대	 병장  하사
소대	 중위 ( 소위)  중사
중대	 대위  상사
대대	 중령  원사
연대	 대령  원사  준위
여단	 준장  원사
사단	 소장  원사
군단	 중장  원사
군사, 작전사	 대장  원사
육본	 참모총장  원사

대한민국의 여군 역사

- 1950년 9월 6일 6·25전쟁 기간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정식
- 1953년 2월 1일자에 육군보병학교에 여군교육대 신설(타자, 전통예절, 다도, 꽃꽂이 교육 등)
- 1962-1972년 **미스 여군 선발대회**
- 1967년 7월 14일에는 육군간호학교가 창설되어 **간호장교** 양성
- 1974년 1월 개편된 여군계급제도에 따라 장교·부사관만으로 편성
- 1984년 중사 이상 결혼 허용
- 1988년 기혼 여성 출산 허용
- 1990년에 여군병과가 해체된 후 2월에 여군학교가 창설
- 1997~1999년 대한민국 공사, 육사, 해사에서 여성입교가 허용
- 2002년에 육군에서 여군 소위 20명이 처음으로 소대장에 보직, 공군에서 첫 여군 조종사가 배출
육군여군학교 해체, 3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로 양성통합교육
간호장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장군이 배출
- 2003년에 여군 장교가 처음으로 전투함에 승선
- 2007년에 첫 여군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 기혼 여성 여군 응시 허용
- 2008년 3월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이 **국방여성정책과**로 개칭
- 2010년에 각 대학교에 여성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창설
전투병과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배출
- 2015년에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에서 여성입교



훈련 중인 여성 광복군
(여성가족부 제공)

6·25 전쟁 탄생한 대한민국
여자의용군 (국가기록원 제공)



대한민국 첫 여군 탄생

1949년 7월 30일, 32명 전원이 훈련을 끝나치고 육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했다.



▲ 대한민국 정식 첫 여군이었던 여자배속장교 단체 사진 © 네이버 누리꾼 블로그 캡처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여군 참전사>



창군 이래 최초 여군장성 3명 동시 탄생



허수연 대령

강선영 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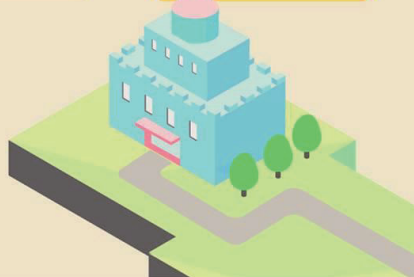
권명옥 대령

[출처] - 2017.12.28.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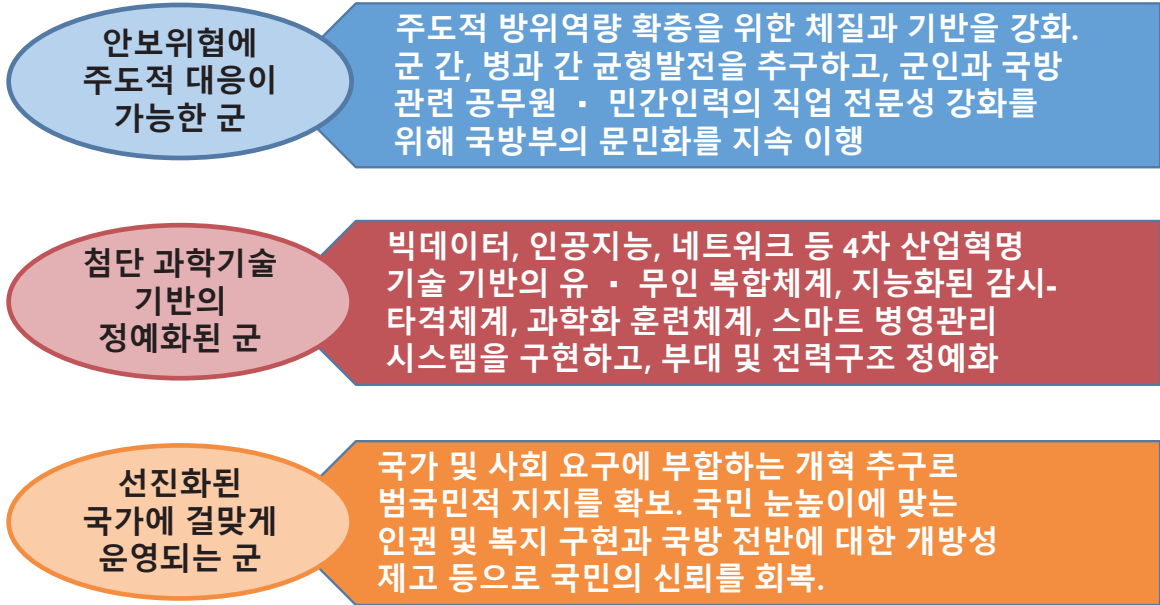
- *최초 여군 장갑차 조종수
- *육군 최초 해안경계부대 여군 중대장
- *최초의 여군 JSA경비대대원으로 선발
- *해병대 창설 63년 만에 여군 영관장교 탄생
- *해군 최초 해상초계기 여군 교관 조종사 및 해상기동헬기 여군 정조종사 탄생
- *해군 최초 여군 함장·고속정 편대장 탄생
- *공군 최초 여군 군중법사 3훈비 자원스님
- *공군 최초 여군 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장
- *아크부대 최초 여군장교



**여군 비종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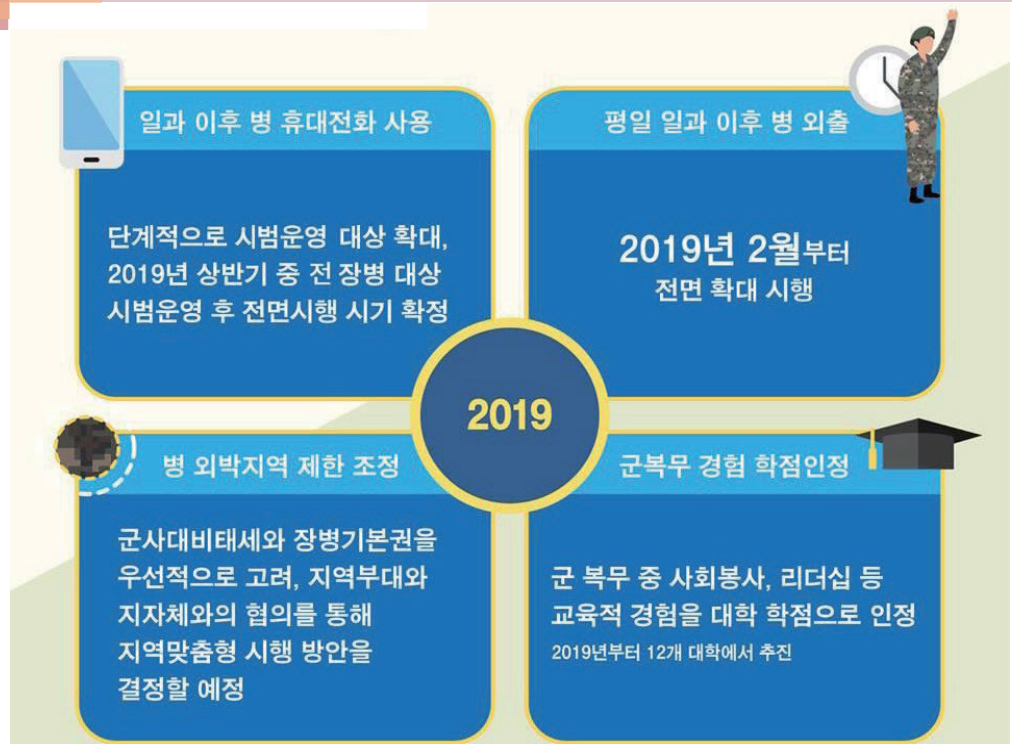


국방개혁 2.0 목표와 추진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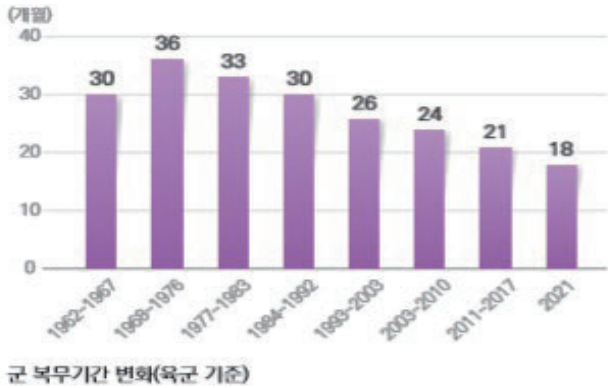


<출처: 2018국방백서>

병사 대상 선진 병영 문화 확립



<출처: 국방 인포그래픽>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학업,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사랑 카드 이용

✓ 나라사랑카드 이용금액 ▶ 36.8% 증가

* 2017년 이병 봉급 163,000원 / 일병 봉급 176,400원
* 2018년 이병 봉급 306,100원 / 일병 봉급 331,300원

봉급 인상 후 이병 및 일병의 경우에도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카드 결제 금액 (월평균)

↑ 36.8% (191,233 → 261,609)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단위: 원)

<출처: 국방 인포그래픽>

상비인력 감축 계획

구분	상비병력	2018년	2025년	구분	상비병력
육군	46.4만여 명	59.9만여 명	50만여 명	육군	36.5만여 명
해군 (해병대)	7.0만여 명 (2.9만여 명)			해군 (해병대)	7.0만여 명 (2.9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상비병력은 기술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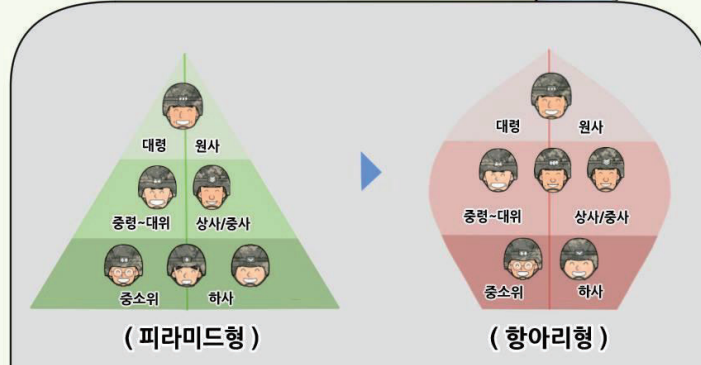
1. 병력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
2. 비전투 분야 근무 인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
3.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병력**을 보강
4. **첨단무기와 장비 전력화**를 통해 전투력은 강화

<출처: 2018국방백서>

장교, 부사관 계급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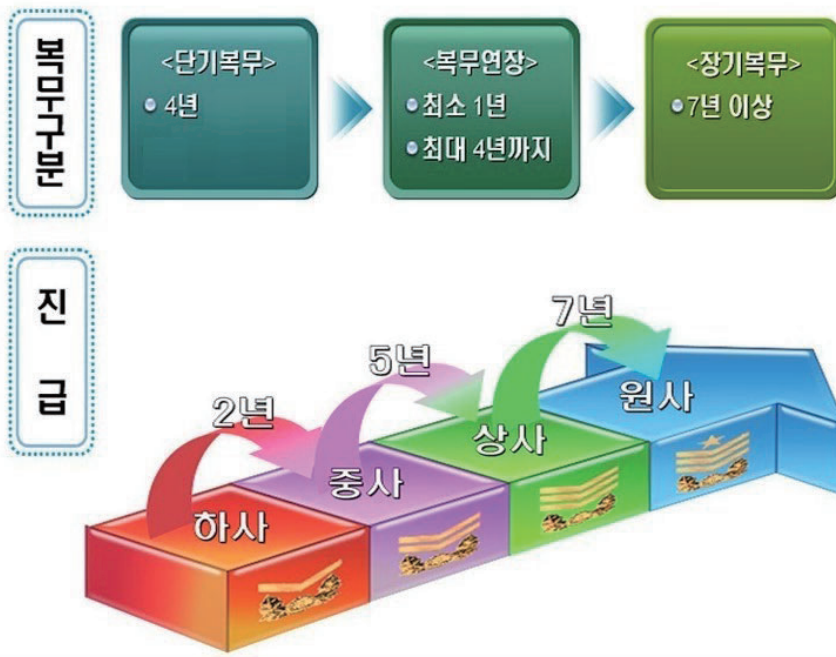
하위계급은 줄이고, 중간계급은 늘려 우수 간부들이 장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아리형의 계급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죠.



부사관의 역할

1. 최초 부사관은 병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병에서 선발함으로써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병을 대표하고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 군의 중추요 허리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 전시 역할 면에서는, 부사관들은 대다수가 대대급 이하 제대에 편제되어 전시에는 직접 전투제대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근무 특성 면에서 보면 부사관들은 대부분 특정 부대 및 지역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므로 부대전통 계승자이며, 해당 직책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요소를 바탕으로 지휘관을 보좌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출처: 부사관학교 안내문>

부사관 신분명칭의 변천

- ◆ 2001. 03. 26이전 **하사관**
(장교의 아래라는 뜻)
- ◆ 2001. 3. 27 이후 **부사관**
(장교에 버금간다는 뜻)
- ★ 부사관들의 희망 : **전문사관**
(신분을 아래니 버금이니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열망)

초급간부의 복무 부적응

1. 간부의 굴레

- 병사들과 또래인데 간부라는 책임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됨

2. 첫 사회 생활

- 대부분 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하는 정식 사회 생활이라 미숙한 점이 많음

3. 반복적인 일상

-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일상화되어 삶에서 즐거움을 찾기 어려움

4. 업무 미숙과 과도한 업무 부담

-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군 조직 업무는 초급간부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림

- 행정 업무로 대부분 시간을 보냄. 컴퓨터 앞에서 문서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함

-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병사 위주이므로 초급간부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많음

6. 동료의 부재

- 학교 동료들이 같은 부대로 배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같은 계급이면 대부분 진급에서 경쟁 대상자가 되므로 친밀한 관계 맺기가 어려움

“자살, 개인 문제로 봐선 안돼, 관심 집중을”

국방부, 서주석 차관 주관 자살예방대책회의

국방부는 5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병영문화혁신TF장 및 각군 인사참모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월 중 자살사고 빈도가 높아 자살예방대책 회의를 개최.

회의 참석자들은 자살예방 교육 시 지휘관 참여 의무화와 초급 간부에 대한 세심한 배려, 각종 처벌에 따른 부담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 방지, 군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필요성

서 차관은 “자살 원인을 개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를 완전히 불식시켜야 하며 부대 차원의 문제점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고 강조했다.

<출처: 2018. 04. 05. 국방일보 이영선 기자>

軍, 5월에만 사망사고 10건...오늘 대책 회의

국방부는 오늘(23일) 오후 육해공 각 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을 모두 불러 서주석 차관 주재로 군내 사망 사고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군 내 사망 사고는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병사와 부사관이 각각 3명, 준사관과 군무원이 각각 1명씩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군에 공문을 내려보내 우리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인명 사고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각급 부대 운영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05-23 YTN뉴스 강정규[live@ytn.co.kr]

군 간부 자살률 증가...일반병사의 2배

◇10년간 군 계급별 자살현황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자살자	65	60	76	78	74	77	81	94	70	76
간부	16	19	22	25	22	23	29	36	32	31
-소령 이상		2	2	1	1	2	2	2	1	1
-준위 이상	6	5	6	8	6	7	9	7	10	6
-하사 이상	10	12	14	16	15	14	18	27	21	24
병사	49	41	54	53	52	54	52	58	38	45

※ 자료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인성검사 결과 B(관심)-C(위험)등급 판정받은 군 간부 현황 (단위 : 명)

	2012	2013	2014. 6월까지
장교	2175(3%)	2123(5.9%)	1501(5.9%)
부사관	6968(9.5%)	6662(8.4%)	3910(7%)

※ 괄호 안은 전체 검사자 중 비율

※ 자료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육군 GOP에서 소대장 생활을 하다 2012년 전역한 김모(30)씨는 "초급간부는 병사와 지휘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며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병영문화 개선책'도 초급간부들의 일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

<출처:중앙일보 2014.09.10.>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소속	17년	18년	증가율
공군	56	119	2.3배
사회복무요원	13	27	2배
기타	41	79	1.9배
육군	823	888	1.07배
의무경찰	54	48	0.8배
해군	32	42	1.3배
해병대	14	29	2.07배
의무소방	3	6	2배

상담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병영 인권 실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장병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부서관 및 준서관	하 사	39	24%	159 (14.2%)	214 (19.2%)
	중 사	28	18%		
	상 사	24	15%		
	원 사	5	3%		
	준 위	3	2%		
	부서관(전체)	60	37%		
장 교	소 위	7	12%	54 (5%)	
	중 위	25	46%		
	대 위	17	31%		
	소 령	4	7%		
	중 령	-	-		
	대 령	1	1%		
	장교(전체)	20	37%		

하사와 중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초급간부들의 근무고충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로 사생활 침해, 휴식권 침해, 부당지시, 상관의 폭언 등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참고 : 피·가해자 계급 분포 비율 비교]

구분	17년 1순위		18년 1순위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병	일병(17.9%)	상병(20%)	일병(23%)	상병(19%)
부사관	중사(32.6%)	상사(26%)	하사(24%)	상사(33%)
장교	대위(35.1%)	중령(23.9%)	중위(46%)	중령(25%)

사생활 침해/통제 피해는 대부분 초급간부들인데, 조기출근, 야근강요, 퇴근 후 위치보고 등에 대해 새로 임관하는 초급간부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관/비사관 진급률 현황

구분		소령 ⇒ 중령			중령 ⇒ 대령			대령 ⇒ 준장		
		대상	선발	진급률	대상	선발	진급률	대상	선발	진급률
'15년	사관	300 여명	168	50% 이상	800 여명	128	16%이상	700 여명	45	6%대
	비 사관	3000 여명	377	10%대	1900 여명	64	3%대	340 여명	13	3%대
'14년	사관	300 여명	243	60% 이상	800 여명	129	16%이상	700 여명	45	6%대
	비 사관	1900 여명	307	10%대	2000 여명	61	3%대	440 여명	13	3%대
'13년	사관	200 여명	185	70% 이상	800 여명	134	16% 이상	700 여명	45	6%대
	비 사관	2600 여명	335	10%대	1900 여명	66	3%대	340 여명	13	3%대

※ 비사관 : 3사, 학군, 학사, 기타

<출처: 2016.10.12.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김동철 국회의원 자료실>

인권위,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8.11.21.)

부사관은 부대관리, 교육훈련 및 소부대 전투력 육성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부사관을 전투부대 병력 40%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부사관들은 장기복무 선발 심사과정에서 상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도 장교의 지시를 받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장교들은 87%(205명)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다고 대답
- 남자부사관 33%, 여자부사관 44% 차별의식 느껴,...
- 계급 간 존중의 문화 정착 필요

인권위,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2018.11.21.)

인권 침해 피해시 대응

- 부사관이 지휘관이나 장교 혹은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자 부사관의 70.%(528명)와 여자 부사관의 74.3%(156명)는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응답하였다. 지휘계통에 보고했다는 응답은 20%(161명) 미만이었다.
- 그 사유는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거나, 자신의 진급과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사관들이 병사들 인권상담을 수행할 때에도 소극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군대 내 권리구제 보장체계 강화 및 관련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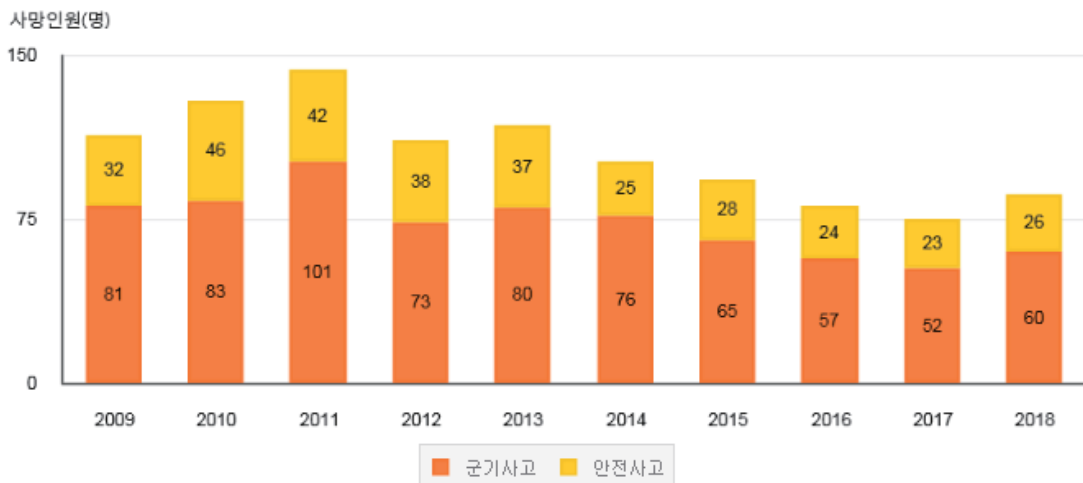
인권위,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현재까지 군 내에서의 자살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간부 자살자는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들로서, 이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소속 대대장 및 대대에 배치된 자살예방 전담 교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이에 국방부에서는 지휘관 및 자살예방 주체자(자살예방전담교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군내 자살 징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전장병이 Gate-Keeper(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군 전반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배치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조기에 충원하며, 간부전담 상담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협업하여 전문강사진과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교육 콘텐츠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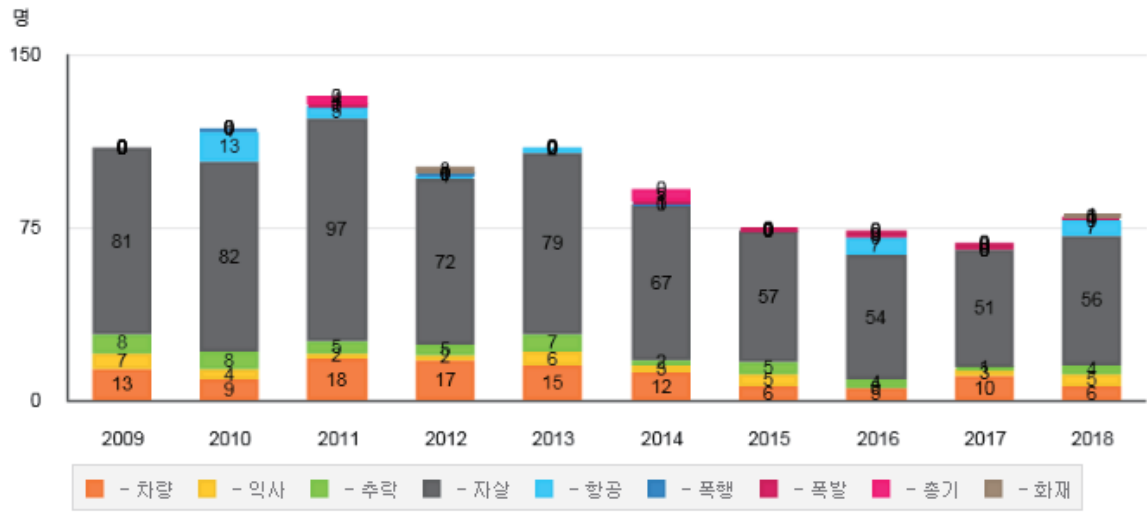
<출처:국방부 보도자료(2018.02.05.)>

군 사망사고 추이



<출처:e-나라지표국방부 (내부행정자료) 2019.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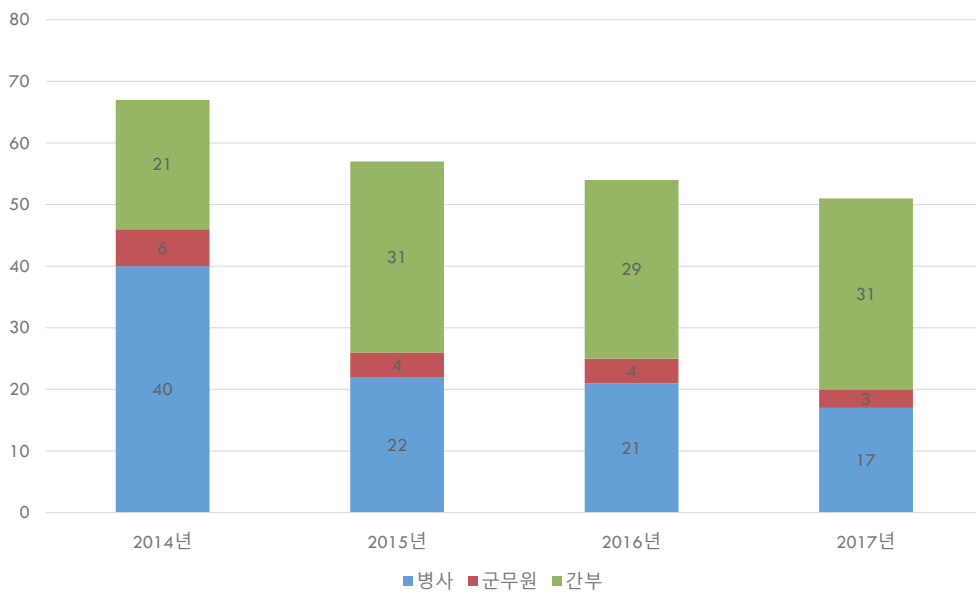
원인별 사망사고 현황



출처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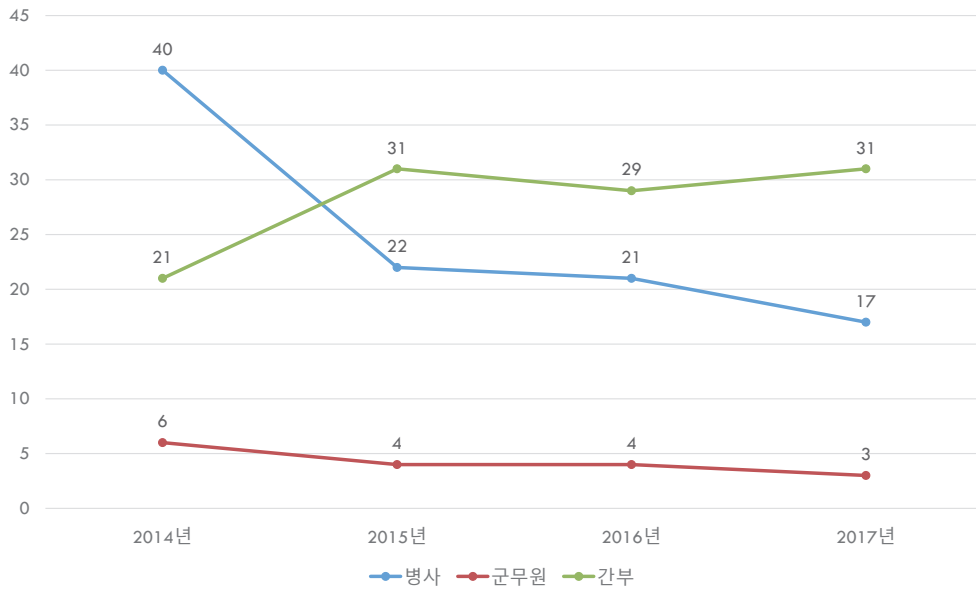
<출처:e-나라지표국방부 (내부행정자료)2019.03.22.>

계급별 자살인원



<출처: 국회의원 최재성 보도자료(2018.10.10)>

계급별 자살 인원



<출처: 국회의원 최재성 보도자료(2018.10.10)>

백승주 "5년간 자살한 군 간부 131명" 가장 많은 계급은?

계급별로 보면

준·부사관이 102명(77.9%),

장교는 29명(22.1%)으로

준·부사관 계급에서는 하사가 39명(38.2%)

장교 계급에서는 대위가 15명(5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처:2016년 국방위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백승주(2016.10.06)>

부임 4일만에 숨진 공군소위 자살 추정, 유족 "업무 과중" 주장

공군의 한 초급장교가 부임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숨진 장교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 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소위의 아버지는 "행정계장 업무는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선임은 3일만에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났다"며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힘들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소위의 SNS 기록에는 '일이 너무 많고 어렵다', '군기도 싸다' 등의 내용이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충북인뉴스2018.01.22.(<http://www.cbnews.co.kr>)

지난달에만 9명...장교·부사관 軍간부 자살 늘어

국방부가 군내 자살 사고를 분석한 결과 간부의 경우 **업무 부담** (14.6%)과 **복무 부적응**(11.2%) 등 군대와 관련된 원인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15.7%) 때문에 자살한 군 간부도 많았다. 국군수도병원 백명재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이사를** 자주 하거나, 격오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간부가 많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다 **우울증** 성향을 보이는 환자가 제법 있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또 "정신과의 상담을 받고 싶어도 주변에 알려져 진급에 불리해질까봐 꺼리는 군 내부의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영문화 혁신과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사의 인권과 복지가 개선된 데 비해 **간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간부 자살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2018.04.04)>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법 의견서

-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

군인은 명령복종의 사슬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국가안보를 위해 공직을 분담하는 존재이고 능동적인 시민이다.

병영생활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상명하복을 통해서, 군 지휘권을 이용해서, 외부의 신속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적 자기규율과 공동결정제도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인권강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중략)

조직적 배제와 권위의 불평등은 개별군인의 스트레스와 소외를 낳고 자살에 이르게 한다.

직업적 이중적인 고충으로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자해사망이 높다.

(중략)계급별로 고충을 적절하게 표출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인권친화적인 군대로 진화할 것이다.

<출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살예방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

【도표 6-1】 연도별 국방헬프콜센터 일일 평균 상담 건수

2018년 11월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 건수	47	111	159	176	170

【도표 6-2】 연도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원	95	148	207	246	297	346	383	383	522	660

【도표 6-3】 연도별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원	824	1,601	540	434	550	534	653	664	668	822	650

<참고 자료>

- *박규암 (2018). 군 조직문화가 초급 부사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영 (2018). 육군 초급간부의 조직사회화 전략과 조직 몰입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재엽 (2019). 육군 부사관 획득률 제고와 우수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국내석사]
- *국방여군 60년사 (2010.12.30.) 국방부
- *2018 국방백서 (2019.03.25.) 국방부
- *2018 연례보고서 (2019.05.20.) 군인권센터
- *사사IN (2007.10.04.) 대한민국 여군들의 일그러진 초상
- *국방부 보도자료 (2018.02.05.) “자살예방 추진 계획 토의 개최”
- *국방부 인포그래픽/웹툰 (2018/2019)
- *국방논단 (2018.12.16.) 부사관 인력구조 및 운영개선 방향
-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8.11.21.) 국가인권위원회
- *제9차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2015.06.10.) 국회(임시)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2018.02.07.) 국회(임시)
- *보도자료(2018.10.10.) 국회위원 최재성. ‘장병자살, 간부에게도 눈 돌려야’
- *보도자료(2016.10.12.) 국회의원 김동철. ‘육군본부’
- *<https://brunch.co.kr/> 매거진. 예비장교들을 위한 가이드북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존중해 주는 관계

감사합니다

“군 인권의 사각 지대: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 토론문

김 광 병(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늘 군 인권 관련하여 발제를 해주신 이경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을 준비하면서 군 인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발제문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서 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소견을 드립니다.

발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상황을 지적하십니다.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사생활 침해, 휴식권 침해, 부당지시, 상관의 폭언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냥 참고 지나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거나’, ‘자신의 진급과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우려해서’ 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는 부사관들이 병사들 인권상담을 수행할 때에도 소극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군대 내 권리구제보장체계 강화 및 관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초급간부의 인권침해 피해가 드러나는 이유를 새로 임관하는 초급간부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초급간부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살의 이유는 업무부담, 복무 부적응 등의 군대와 관련된 원인과 정신질환 때문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는 이사가 많고, 가족과 떨어져 살고, 외로움을 잊으려고 술 마시다 우울증 성향을 보인다고 하여 이 역시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및 대대에 배치된 자살예방 전담교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자살 징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고 전 장병이 생명지킴이(Gate-keeper)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상과 같은 군 인권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토론자 역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급간부의 인권침해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로 초급간부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초급간부들의 문제의식이 높았다면 자살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제시하신 대응과 같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초급간부 등의 인권침해 현상이 드러난 이유는 인권위와 같은 군 외부기관의 구제기능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군의 인권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여론 및 국민의 질타를 받은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군 내부적 구제제도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인권위와 같은 구제기관이 군 내부적 구제제도를 견인하는 등 구제기능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군인권센터와 같은 NGO 단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는 초급간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길은 부제에서도 밝혔듯이 초급간부

에게 인권감수성을 심어주면 인권 주장을 할 수 있어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초급간부의 인권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초급간부를 지휘하는 지휘관 등의 고위계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인권감수성 교육이 동시 또는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처럼 인권 침해의 대상이 초급간부이므로 가해자인 지휘관 또는 고위계급 간부의 무지에서 비롯되거나 군기강 확립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군 조직의 특유 문화라는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초급간부는 상급자로부터 지휘를 받으면서 동시에 병사를 지휘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로 피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급간부 인권보장은 인권친화적 군 조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급간부의 자살 이유가 업무부담, 복무 부적응, 정신질환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인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단순히 이러한 이유들이 초급간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초급간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토론자는 이러한 이유로만 초급간부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적 성격과 결합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군인권의 사각 지대 :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 토론문

노 자 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6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의 상황 상 군(軍) 내부의 실상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저히 베일에 싸여왔습니다. 이러한 군 조직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그 개념과 보장 수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인권’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적용 및 실천되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군과 인권은 연결되기 어렵다는 도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 복무하는 국민’인 군인의 인권문제는 오히려 방치되어 왔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특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위계적 조직문화와 내부 관행으로 인해 종종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토론자가 경험한 ‘대한민국 군에 복무하는 국민’으로서의 개인은 그 어떤 직업인보다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삶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맥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호한 경계는 대한민국 군이라는 구조적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기인하는데, 군인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자연인으로서의 자의적 결정보다 군인으로서의 선택이 매우 일상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삶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구조적 환경 여건은 군인들로 하여금 어느새 스스로 자신의 인권 수준을 낮추고, 인권침해 상황에 무뎌지게 만듭니다. 동시에 군인의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 또한 낮추게 됩니다. 즉, 군인의 인권보장이나 인권향상을 위한 목소리는 오히려 어색하게 여겨졌고, 부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적 흐름은 군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군의 실상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 잦아지면서 군대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국방개혁의 목적 중 하나로 ‘인권 및 복지 구현’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자의 자료는 군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의 추이와 그에 대한 기사 등을 통해 군 조직 내 ‘인권’ 개념이 어디쯤에 놓여 있었고, 그 위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해 주신 발표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초급간부가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여군 초급간부가 경험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군에 대해서는 그 선발과정부터 조직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인식 및 부당한 대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구자일, 2019¹⁾). 최근 여군의 조직 내 지위나 정체성은 어떠한지, 여성 군인이기 때문에 겪는 인권 침해는 어떠한 양상으로 발견되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경험(또는 前)성고충 전문상담관으로서의 여군 인권보장 및 향상에 대한 견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외부 민간전문가의 인권구제 역할로 인해 군대 내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지고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군에는 의견 건의 제도, 고충심사 제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제도, 여군·여군무원 등 여성 인력들의 고충 상담을 담당하는 여성고충상담관제도 등이 있습니다. 내부 인력을 활용한 다수의 제도들 가운데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군 조직 내부의 민감한 사안(성고충, 인권침해 등)에 대해 다루는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자일 (2019). 여군을 인식하는 생각의 틀: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5(2), 85-119.

[부 록]

표절과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은 정책연구보고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과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 윤리 매뉴얼”을 발간. 학문분야별로 상세한 연구윤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판정할 기준이 제시됨. 현재까지 학계에서 통용되어온 의견이나 기준에 입각해 판단하여도 무방함

■ 표절의 정의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은 표절에 대해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
- 「한국학술단체총연맹협회 연구윤리 지침」은 표절을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사용한 경우”로 규정
- ‘WAME(국제의학편집인협회)’ 편집인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계는 1개 문장 정도, 그것도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까지로 본다”는 의견

■ 말 바꾸어 쓰기 표절

- 자신의 글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소개할 때 말바꾸어 쓰거나 내용을 압축하여 쓰는 요약으로 사용. 이 경우도 해당하는 부분에 출처를 표시
- 원문의 문장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 유사한 것으로 바꿔쓰는 경우 (cut-and paste) 부적절한 말 바꾸기가 됨
-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을 소개할 때는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전환해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

■ 잘못된 인용

- 다른 사람의 글을 소개하는 경우 그 글을 그대로 옮겨와 내 글에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은 단지 일부라도 수정 없이 가져오는 것은 표절. 글을 각주에 문단 그대로 옮겨놓고 각주형식으로 출처를 밝히는 경우도 각주처리가 실제로 가져와 쓴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해주지 않는 경우는 표절
- 전문인용을 하는 경우 가져온 사람의 글과 자신의 글을 구별하기 위해 따옴표나 들여쓰기로 구분하여 확연히 구분하여 혼동이 없게 하고 가져온 글의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

- 자기표절은 자신이 발표한 저작물에서 이미 기술한 적이 있는 내용을 새로운 논문

이나 책에 재사용하는 것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구 부적절한 행위로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여부를 불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은 제4항에서 중복게재를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로 기술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는 자신이 발표한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물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로 거의 같은 논문을 반복해서 출판하는 행위를 의미

■ 중복 번역출판

-영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나 한글로 출간한 논문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도 하나의 연구 성과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중복 번역출판 행위

*출처: 교수신문

■ 연구 부정행위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에 제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아래 각호와 같음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Memo

2019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년 10월 인쇄

2019년 10월 발행

발행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76
(안서동 115번지) 백석대학교
우편번호 31065
전화 041-550-9114
홈페이지 <http://www.khlea.org/>
편집인쇄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사

※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